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. 3. 18 선고 2019가단1690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 론 종결 2020. 1. 15

판 결 선고 2020. 3. 18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. 10.17. 접수 제832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(역삼세무서)는 B의 조세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. 10. 17. 강원 영월 군 C 임야 82,612㎡ 중 B 명의 2/14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(이하 '이 사건 압류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 이후 B는 2014. 3. 25. D에게 위 부동산 중 2/14지분에 대하여증여를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,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2016. 1. 27. 강원 영 월군 C 임야 82,612㎡ 에서 분할되었다,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, E이 각 4/14지분,F이 6/14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.

다. 이후 원고는 2016. 4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공유자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해주지 않고 있다.

이 사건 압류등기 후 현재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 대한 과세징수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,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3. 판 단

가. 국세징수법 제50조, 제53조 제1항 제2호, 동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 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하는 규정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토지가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701판결 참조).

한편,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,제2항 제4호, 제27조에 의하면,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이고,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그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된다.

나.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등기 에 관하여

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사유가 있다거나, 피고의 B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달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박동규

별지